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1. 주요 개정 내용

① 담배의 정의 확대 (합성 니코틴 포함)

- (기존)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한 것만 담배로 인정
- (변경)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니코틴’(합성 니코틴 포함)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도 담배에 포함
- (영향)
기존에 담배소매인 지정 없이 판매 가능했던 합성 니코틴(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앞으로는 지자체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판매 가능, 담배의 온라인 판매제한, 소매인 미지정자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등

2. 시행일자: 2026년 4월 24일 (금)

3. 기존 합성 니코틴 판매자 준수사항 안내

가. 소매인 지정 신청 의무

- **법 *시행일(2026. 4. 24.)이전까지**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판매하는 자는 파주시청에 반드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여 소매인 등록 필요
*소매인 지정 없이 시행일 이후에 판매 적발 시, 벌칙 사항

나. 거리 제한 유예 특례 (조건부 지정)

- **대 상:** 법 공포일(2025. 12. 23.) 이전부터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합성 니코틴 등)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 법 개정 공포일 이후 신규 진입자는 거리제한 유예 대상이 아님.
- **내 용:** 해당 대상이 영업소 간 거리 기준(100m)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개정된 정의의 담배(니코틴 원료)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영업소 간 거리 제한 적용 유예

- 신청 서류

- 1)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 2) 사업자등록증
 - 3) 임대차계약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4) 공포일(2025. 12. 23.) 이전부터 영업소에서 제품을 판매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품 공급계약서 등)
 - 5) 신청인 신분증
- 5-1)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부,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 기한: **2026. 4. 23.(목)**

- 접 수 처: 파주시청 민생경제과(031-940-4545)

- 주의사항

1. 유예 기간 중 일반 담배(연초)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지정이 취소됨.
2. 법 시행 2년 후(2028. 4. 24.)에는 유예가 종료되어 소매인 지정이 자동 취소됨.
(이후 영업 유지를 위해서는, 거리 기준 등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을 충족하여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필요)
3. 유예가 인정되는 거리제한 요건 외에,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거나,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이 불가함.

2026. 3. 24.

파 주 시 장